

동양미래대학교

2024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4년 5월 24일(금) 10:00~11:00	회의장소	1호관 8층 회의실
참 석 자	○ 참석 위원(8명) : 조승현, 원대연, 원성홍, 김남진, 정현옥, 박진성, 공지윤, 유제승 ○ 불참 위원(2명) : 김재영, 김종겸 ○ 배석 직원(3명) : 장민석(사무부처장), 장재규(기획예산팀장), 허성용(기획예산팀 과장)		
회의안건	1. 제1안건: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 제2안건: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심의		

[회의내용]

위 원 장 : 위원 정수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함.

1. 제1안건 :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가. 안건 설명 및 심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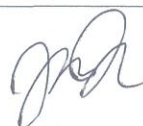
위 원 장 : 금일 제1안건인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사무부처장 :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함.

- 1) 세입: 교지 구입을 위한 건축기금적립금 270억원 인출, 2024회계연도 본 예산 수립 시 전기이월자금에 반영되지 않은 결산상 잉여금 6.72억원을 반영하여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본예산 대비 약 276.72억원 증가한 916.42억원으로 편성함.
- 2) 세출: 인출된 건축기금적립금 270억원을 토지매입비에 반영하고, 잉여금 6.72억원을 교육환경개선(교내시설개보수) 사업에 투입하여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본예산 대비 약 276.72억원 증가한 916.42억원으로 편성함.

유제승 위원 : 잉여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함.

사무부처장 : 잉여금이란 2023회계연도 결산상 차기이월자금(등록금회계)과 2024회계연도 본예산에서의 전기이월자금(등록금회계)의 차이를 뜻함. 2023회계연도 등록



금회계 예산 집행 후 사업 집행 잔액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잉여금은 지난 2024. 1. 22.(월)에 개최된 '2024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용방안을 마련하였고, 잉여금처리원칙에 따라 교육환경개선 등 직접교육비에 사용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함.

정현옥 위원 : 일반적으로 대학의 잉여금처리원칙은 학생들의 학업 지원,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적합한 시설 제공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데 잉여금을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 됨.

공지윤 위원 : 교지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함.

원대연 위원 : 대학은 부족한 교지를 확보하고, 향후 캠퍼스 확장 등에 대비하고자 고척동 77(1,075㎡), 77-3(1,457㎡) 토지 구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기숙사나 평생교육·창업지원 시설 등으로 개발하여 대학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

박진성 위원 : 학령인구 감소,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등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지 구입은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적절하게 활용될 경우 대학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 됨.

원성홍 위원 : 제출된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잉여금, 토지매입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견이 없음.

김남진 위원 : 원성홍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견이 없음.

위 원 장 :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위원들의 의견을 구함.

전 위 원 :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고 추가 의견이 없음.

나. 심의 결과

위 원 장 : 전 위원 찬성으로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

2. 제2안건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심의

가. 안건 설명 및 심의 내용

위 원 장 : 제2안건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기획예산팀장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함

- 1) 「고등교육법」 제11조제9항이 개정(시행일 2024. 8. 14.)됨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게재일로부터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함
- 2)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연관 조항 오류를 정정함.
- 3)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규정관리규칙」이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개정 절차를 개정함.

원대연 위원 :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반영하여 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연관 조항의 오류를 바로잡으며, 규정류의 개정에 대한 조문을 표준화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음.

원성홍 위원 : 원대연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 이견이 없음.

위원장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위원들의 의견을 구함

전 위원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 찬성하고 추가 의견이 없음.

나. 심의 결과

위원장 : 전 위원 찬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

3. 폐회선언

위원장 : 본 회의록 간서명을 대표할 위원을 선출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선출할 것을 제안함.

원대연 위원 : 대표할 위원으로 원성홍 위원, 박진성 위원, 정현옥 위원을 추천함.

전 위원 : 전원 찬성함.

위원장 : 참석위원 전원 찬성을 확인하고 간서명 대표로 원성홍 위원, 박진성 위원, 정현옥 위원이 선임됨을 선포함.

위원장 : 추가 논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포함.





2024. 5. 24.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동양미래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조 승 현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원 대 연	(서명 또는 날인)
	원 성 흥	(서명 또는 날인)
	김 남 진	(서명 또는 날인)
	김 재 영	(서명 또는 날인)
	김 종 겸	(서명 또는 날인)
	정 현 옥	(서명 또는 날인)
	박 진 성	(서명 또는 날인)
	공 지 윤	(서명 또는 날인)
	유 제 승	(서명 또는 날인)